

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·독촉고지서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기금 납부·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8. 28.

경기도농업기술원 고령노년지원사업 담당



1. 건 명 :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·독촉고지서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보험료 징수법 제32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08. 28. ~ 2026. 09. 11. (15일간)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농업기술원 고령노년지원사업 지역협력과(3층)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·독촉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고령노년지원사업 지역협력과 이진솔(Tel 031-463-733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고 제2026-61호

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

연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서류의명칭	서류의주요내용	반송사유
1	김 * 석	830227-1*****	경기도 여주시 교동로 11* , 10*동 **02호	납부고지서	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징수금 납부고지서	보관기간 경과 등

위 서류는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.

※ 본 건에 관한 문의: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, 안양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3층 이진솔(031-463-7333)

2026. 08. 28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



고용노동부